

「미래행복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미래행복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예금약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이라 함), 동법 시행령, 통일부 고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제도(미래행복통장)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운영지침"에 따라 미래행복통장사업수행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이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지한 북한이탈주민(실명의 개인, 이하 "고객"이라 함)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종류

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고객은 72개월, 기관은 78개월로 합니다.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고객은 10만원이상 50만원이내 금액 중 5만원 단위로 지정하며, 기관은 0원이상 원단위로 합니다.

제 6 조 적립방법

- ① 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 가능합니다.
단,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을 기관이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한 경우에 한해 적립금액 변경 가능합니다.
- ② 고객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은행에 통지한 운영지침에 따른 적립종료일까지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 ③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제 7 조 해지방법

- ①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해지신청을 하고, 기관이 은행에 해지 승인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관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요건 충족시 지원금을 해지하고, 지원금은 신규시 고객이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제 8 조 지원금 적립대상 및 지급방법

- ① 기관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적립금을 납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 ② 기관은 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제 9 조 적립중지

- ① 운용지침에서 정한 적립중지 사유 발생시 기관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이 은행에 적립 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 제한 등록됩니다. (적립중지기간은 운용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② 적립중지 기간 중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이자 지급방법

-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11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 하여도 본항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 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을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 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제①항에 의한 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제 11 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 10조 제①항의 기본 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24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을 보유한 경우보유하거나 가맹점 결제 대금 입금실적을 보유한 경우(연 1.0%)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1.0%)
- ③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신용/체크)의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연 0.5%)

(주1) 급여입금실적 인정기준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제 12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면제)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제 13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제 14조 기타

- ① 위 특약 사항 변경 시 은행은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 ②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고시한 '운영지침'에서 정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승인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부 칙

1. 2020년 04월 13일부터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 개정 특약이 적용합니다.
2. 2022년 02월 16일부터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 개정 특약이 적용됩니다.
3. 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